제20-11호
2020.06.01

KOSBI 중소기업 포커스

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 전망과 정책과제

책임작성 | 노민선 연구위원(02-707-9843, msnoh@kosbi.re.kr)

※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(www.kosbi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KOSBI 중소기업연구원
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

목 차

1. 서론

2. 중소기업 고용 현황과 전망

3.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외 정책사례

4. 정책과제

요 약

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으며,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는 일자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

- 2020년도 경제성장률 : Nomura(-6.7%), IMF(-1.2%), Bloomberg(-0.1%)
- 취업자 수 증감(전년동월 대비) : 56.8만명('20.1) → -47.6만명('20.4)

■ 중소기업들은 2020년도 하반기 경영 여건과 채용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, 신규인력 채용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

- 중소기업의 72.5%는 2020년도 하반기 경영환경이 상반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중소기업의 53.6%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가 2021년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
- 중소기업의 35.3%는 2020년도 하반기 종업원 수가 상반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증가할 것이라는 대답(17.1%)보다 2배 이상 많았음
  - 중소기업의 44.0%는 2020년 5월 15일 현재 종업원 수가 2019년말 대비 감소
- 중소기업의 60.5%가 2020년도 하반기에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, 신규인력 채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.8%에 불과
  - 기업유형별로는 신규인력 채용 필요성과 채용 의향 모두 혁신형 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

■ 해외 주요국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고용유지와 소상공인 존립기간 마련을 위한 소방수 역할에 집중했으며, 향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리쇼어링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

-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형태의 정책 추진
  - (美)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보호, (日) 고용조정조성금 특례, (獨) 단축근무지원금 등
-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파격적 지원
  - (美) 중소기업 경제피해 재난대출, (日) 지속화급부금, (獨) 소상공인 긴급지원 등
- 이익발생기업 대상의 세액공제보다는 결손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확충
  - (공통) 결손금 소급공제, 세금 납부 유예,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
-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
  - (美)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미국 제조기업 이전비용 전액을 지원할 필요 (국가경제위원회 Larry Kudlow 위원장, '20.4.10)
  - (日) 해외 생산거점의 국내 이전을 위해 2,200억엔의 추가 예산 편성('20.4.30)

■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해외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

- '(가칭) 중소기업 뉴딜일자리기금' 조성
-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
- 국내 복귀 중소기업의 직업계고 졸업생 채용 지원
- 창업 중소기업의 청년 연구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회사의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
-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이후 퇴사한 직원을 재고용한 경우 지원사업 참여 허용
-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확대

1. 서론

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심화로 금융위기 이상의 경제적 충격 가능성 존재

- 2020년도 경제성장률 전망(한국)
  - Nomura(3.30) : -6.7%, IMF(4.14) : -1.2%, Bloomberg(4.23) : -0.1%
-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IMF 외환위기보다 28.5%,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4.4% 크게 체감(한국경영자총협회, 2020)

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는 일자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

- 중소기업의 76.2%가 2020년 4월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직·간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응답(중소기업중앙회, 2020)
-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79.8%는 코로나19로 인해 R&D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, 2020)
  - 중소기업의 41.3%가 올해 연구원 채용을 계획 대비 축소할 것이라고 대답
- 최근 들어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(통계청, 2020)
  - 15~64세 고용률(OECD 비교기준) : 66.7%('20.1) → 65.1%('20.4)
  - 취업자 수 증감(전년동월 대비) : 56.8만명('20.1) → -47.6만명('20.4)

■ 해외 주요국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음

- 근로자급여보호 프로그램(미국), 생산거점 국내 이전 보조금(일본), 사회보장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확대(독일) 등

■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해외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

- 중소기업의 일자리 확보 및 유지를 지원하고,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2. 중소기업 고용 현황과 전망[1)]

가. 경영여건

■ 경영환경

- 중소기업의 72.5%는 2020년도 하반기 경영환경이 상반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
  - 상반기와 비슷하다는 응답은 20.4%, 상반기 대비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7.1%에 불과했음

[그림 1]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('20년 하반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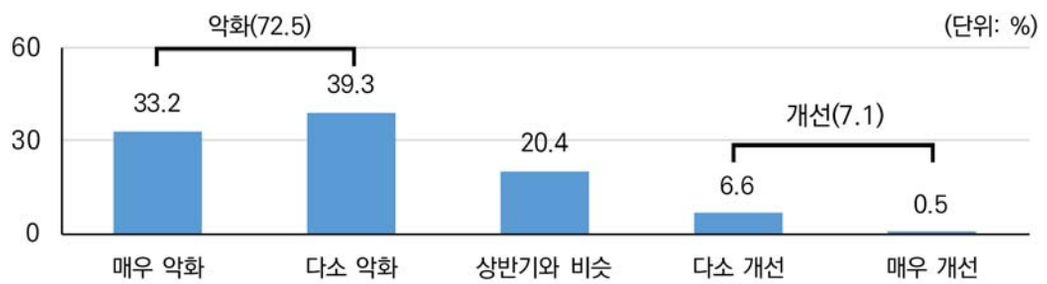

■ 경기회복 시점

- 중소기업의 53.6%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가 2021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며,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또한 32.0%로 높게 나타남
  - 2020년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대답은 5.5%에 그쳤음

[그림 2]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경제위기 회복 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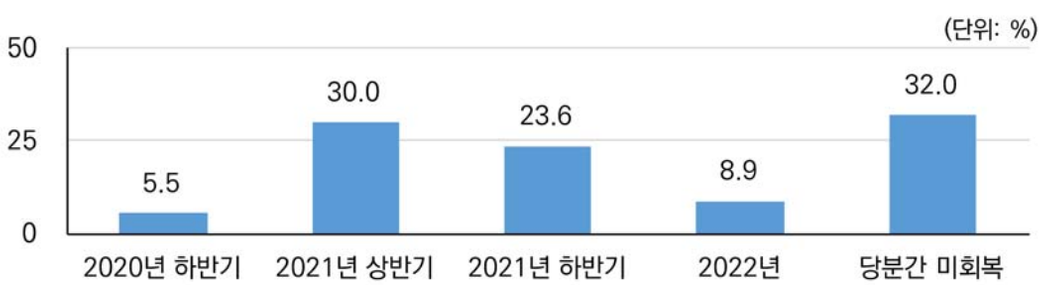

1) 2020. 5. 18(월) ~ 5. 22(금)까지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

나. 종업원 수 변화

■ 변화 실적

- 중소기업의 44.0%는 2020년 5월 15일 현재 회사 종업원 수가 2019년말 대비 감소했다고 응답
  - 중소기업의 43.5%는 2019년말 대비 변화 없다고 응답했으며, 2019년말 대비 증가했다는 대답은 12.5%에 불과했음

[그림 3]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 변화('19.12.31~'20.5.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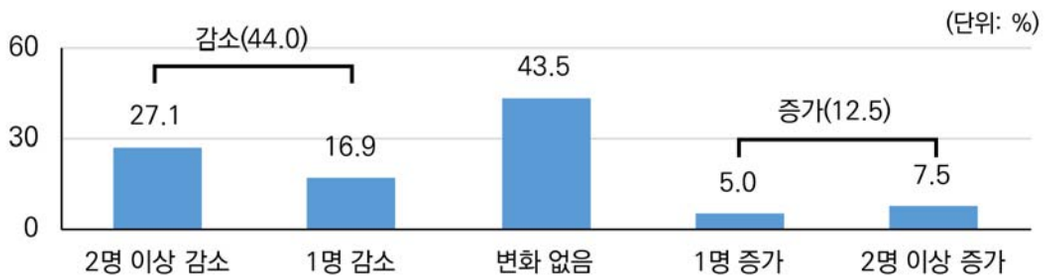

■ 변화 전망

- 중소기업의 35.3%는 2020년도 하반기 종업원 수가 상반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증가할 것이라는 대답(17.1%)보다 2배 이상 많았음
  - 중소기업의 47.6%는 상반기 대비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
- 2020년도 하반기 종업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(40.4%)이 업력 7년 이상 일반기업(33.8%) 대비 높게 나타남

[그림 4] 중소기업의 2020년도 하반기 종업원 수 변화 전망(상반기 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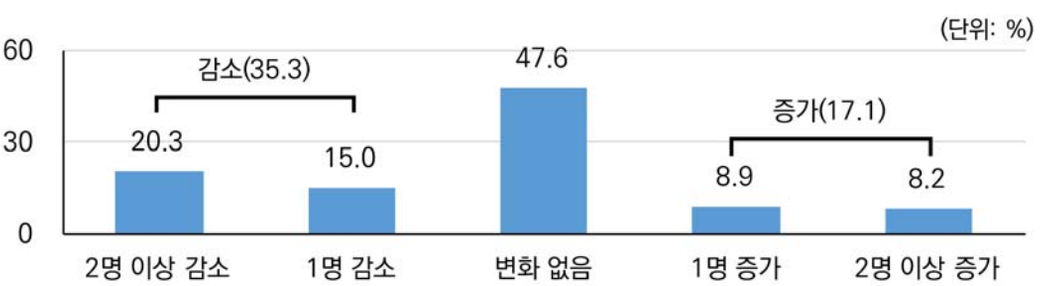

다. 신규인력 채용

■ 종합

- 중소기업의 60.5%는 2020년도 하반기에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응답
  - 중소기업의 33.6%는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하지만 채용 의향은 없다고 응답했으며, 26.9%는 신규인력 채용 필요성과 채용 의향이 모두 있다고 대답

⇒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시 실질적인 정책대상

- 중소기업의 30.8%만이 2020년도 하반기에 신규인력 채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
  - 중소기업의 26.9%는 신규인력 채용 필요성과 채용 의향이 모두 있다고 응답했으며, 3.9%는 신규인력 채용 필요성은 없지만 채용 의향이 있다고 대답
- 중소기업의 35.6%는 신규인력 채용 필요성과 의향이 모두 없다고 응답

■ 기업유형별

- 혁신형 중소기업*의 73.0%가 올해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일반 중소기업(56.4%)에 비해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남

  * 벤처기업,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)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메인비즈)

- 혁신형 중소기업의 43.0%가 올해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여 일반 중소기업(26.7%)에 비해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남

[그림 5] 중소기업 신규인력 채용 필요성과 의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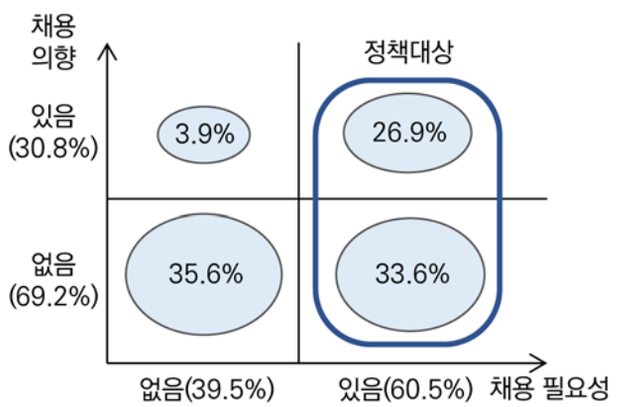

[그림 6] 신규인력 채용 필요성(유형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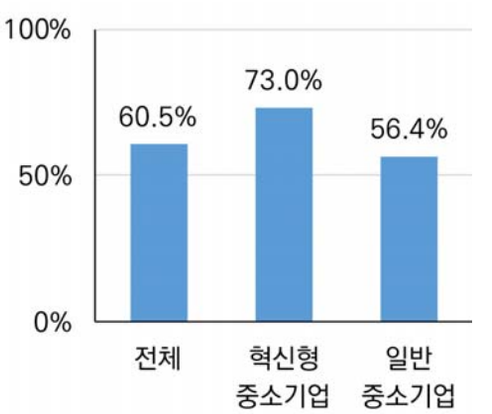

라.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필요성

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기금 조성

- 중소기업의 89.3%는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
  -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은 10.7%에 불과했음

〈표 1〉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기금 조성 필요성

(단위: %)

구 분	매우 필요	다소 필요	다소 불필요	매우 불필요	합 계
비 중	59.8	29.5	5.6	5.1	100

■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했을 때 정부 지원

- 중소기업의 83.0%는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경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
  -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은 17.0%에 그쳤음

〈표 2〉 외국인 근로자의 내국인 대체 시 정부 지원 필요성

(단위: %)

구 분	매우 필요	다소 필요	다소 불필요	매우 불필요	합 계
비 중	58.1	24.9	10.0	7.0	100

■ 코로나19 이후 퇴사한 직원 재고용 시 정부 지원

- 중소기업의 84.5%는 코로나19 이후 부득이하게 퇴사한 직원을 재고용할 경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
  -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은 15.5%에 불과했음

〈표 3〉 코로나19 이후 퇴사한 직원 재고용 시 정부 지원 필요성

(단위: %)

구 분	매우 필요	다소 필요	다소 불필요	매우 불필요	합 계
비 중	49.9	34.6	9.4	6.1	100

3.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외 정책사례

가. 미국

(1) 코로나19 극복 대책(중소기업 중심)

■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(CPRSAA) ['20.3.6]

-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난대출 지원
  - SBA Disaster Loan Program인 '중소기업 경제피해 재난대출(Economic Injury Disaster Loan, EIDL)' 상의 재난에 '코로나19로 인한 피해'를 포함

■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(FFCRA) ['20.3.18]

- 중소기업 근로자가 가정 내 코로나19 격리 사유 발생 시 '유급병가' 부여
  -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의 존립가능성에 따라 유급병가 제공 면제 가능

■ Coronavirus, Aid, Relief and Economic Security(CARES) Act ['20.3.27]

-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(Paycheck Protection Program, PPP)
- 중소기업 경제피해 재난대출(EIDL) 시 '상환면제 선급금(grant) 1만 달러' 지원
- 결손금 소급공제 재도입, 고용유지기업 급여세 감면, 사회보장세 납부 연기 등

■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 (PPPHCEA) ['20.4.24]

- CARES Act 실행예산이 13일만에 소진되어 중소기업 지원예산 추가 배정*

  * 근로자 급여보호(PPP) : 3,100억달러, 경제피해 재난대출(EIDL) : 600억달러

■ 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s(HEROES) Act

- 필수근로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'HEROES Fund' 조성(2천억달러), 근로자 1인당 1,200달러(가구당 최대 6,000달러) 현금 지원
-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(PPP) 요건 완화

※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(5.15)했지만,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과 대통령은 부정적

(2) CARES Act 주요 내용

〈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〉 (Paycheck Protection Program, PPP)

■ 사업 개요

- 신청기간 : 2020. 4. 3 ~ 6. 30
- 신청자격 : 500명 이하 종업원을 보유한 중소기업('20.2.15. 기준)
- 지원예산 : 3,490억달러(3.27 배정) + 3,100억달러(4.24 추가 배정)
- 담당부처 : 중소기업처(Small Business Administration, SBA)

■ 지원 내용

- 대출금액 :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액의 2.5배까지 대출 가능(1천만달러 한도)
- 사용용도 : 급여(복리후생, 보험, 급여세 포함), 모기지 이자, 임대료, 공과금 등
  - 대출금액의 75% 이상을 급여에 사용해야 함(1인당 연간급여액 한도: 10만달러)
- 지원조건 :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채무상환 면제
  - 대출일로부터 8주간 종업원 수 유지
  - 대출일로부터 8주간 급여액이 직전분기 기준 급여액의 75% 이상

  * '20.2.15~4.26 사이에 발생한 해고 또는 급여 감소의 경우 6.30까지 원상회복할 경우 조건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
- 대출이자 : 상환대상 대출금액에 대해 1% 이자율 적용
- 대출기간 : 최대 2년(6개월 상환 유예 가능)

〈중소기업 경제피해 재난대출 선급금〉 (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mergency Advance, EIDLEA)

■ 사업 개요

- 신청기간 : 2020. 1. 31 ~ 12. 31
- 신청자격 : 500명 이하 종업원을 보유한 중소기업('20.1.30. 기준)
- 지원예산 : 100억달러(3.27 배정) + 100억달러(4.24 추가 배정)
- 담당부처 : 중소기업처(Small Business Administration, SBA)

■ 지원 내용

- 지원금액 : 선급금 1만달러
  - 기업당 200만달러 한도의 '경제피해 재난대출(EIDL)' 안에 포함
  - 별도의 상환 의무 없음
  - '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(PPP)'과의 중복수혜 불가능
- 사용용도 : 급여(복리후생, 보험, 급여세 포함), 재료비, 모기지 이자, 임대료, 재난 여파로 지급이 불가능했던 고정부채, 일반 채무와 공과금 등 사업운영자금

〈세제지원 등〉

■ 결손금 소급공제 재도입(NOL Carryback)

- 지원내용 : 2018~2020년까지의 손실금액(Net Operating Loss, NOL)을 100% 활용해서 과거 5년간 국세청(IRS)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
  - (법 이전) 2017년 12월 세법개정(Tax Cuts and Jobs Act) 시 소급공제(NOL Carryback)를 폐지하고, 이월공제(NOL Carryforward)만 80% 비율로 허용
  - (법 이후) 소급공제 한시적 재도입, 이월공제와 함께 100% 비율로 허용

■ 고용유지기업 급여세 감면(Employee Retention Credit)

- 지원대상 : 코로나19 관련 정부 명령으로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회사 매출액이 직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 50% 이상 감소한 기업
- 지원내용 : 종업원*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50%**를 세액공제 또는 현금으로 환급

  * 주당 30시간 이상 또는 월 130시간 이상 근무 / ** 1인당 5천달러 한도
- 대상기간 : 2020. 3. 12 ~ 12. 31

■ 사회보장세 납부 연기(Social Security Tax)

- 지원내용 : 사용자 부담분(6.2%)의 일정비율*을 납부 연기

  * 50%는 2021. 12. 31.까지, 나머지 50%는 2022. 12. 31.까지 납부 연기
- 대상기간 : 2020. 3. 27 ~ 12. 31

나. 일본

(1)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긴급경제대책(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経済対策) ['20.4.7]

〈서플라이체인 대책을 위한 국내투자촉진사업비 보조금〉
（サプライチェーン対策のための国内投資促進事業費補助金）

■ 사업 개요

- 공모기간 : 2020. 5. 22 ~ 2021. 7. 2 (리쇼어링을 희망하는 기업 공모)
- 신청자격 : 중소기업, 대기업, 기업 간 공동
- 지원예산 : 2,200억엔('20년 보정예산*, '20.4.30 성립)
  * 본예산 편성 후에 재해발생이나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본예산 항목이나 금액을 변경하는 예산으로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과 유사
- 담당부처 : 경제산업성
  - 기금설치법인(사단법인 환경파트너십회의(EPC))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

■ 지원 내용

- 지원기간 : 2020. 5. 22 ~ 2023. 3. 31
- 지원내용
  - 리쇼어링을 통한 생산거점 정비사업으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불비용*의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
  * 토지, 건물, 기계 및 장치 등의 취득, 부대공사비, 시스템구입비(소프트웨어) 등
- 지원대상 및 금액

① 생산거점 집중도가 높은 제품·부소재의 공급단절 리스크 해소를 위한 리쇼어링

- 지원비율 : (중소기업) 2/3 한도, (대기업) 1/2 한도
- 지원금액 : 150억엔 한도

② 마스크, 소독액 등 국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 중요한 제품 관련 리쇼어링

- 지원비율 : (중소기업) 3/4 한도, (대기업) 2/3 한도
- 지원금액 : 150억엔 한도

③ 생산거점 집중도가 높은 제품·부소재의 공급단절 리스크 해소를 위해 복수의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리쇼어링

- 지원비율 : 중소기업 등의 그룹 3/4 한도
- 지원금액 : 150억엔 한도

〈지속화급부금〉(持続化給付金)

■ 사업 개요

- 신청기간 : 2020. 5. 1 ~ 2021. 1. 15
- 신청자격 : 자본금 10억엔 미만 또는 종업원 2,000인 이하 기업
- 지원요건 : 2019년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, 2020년 1월 이후 한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50% 이상 감소
- 담당부처 : 중소기업청(지속화급부금사무국 설치)

■ 지원 내용

- 지원금액 : 중소기업 등 법인사업자 200만엔, 개인사업자 100만엔 한도
  - (계산방법) 전년 총 매출액 - (전년 동월 대비 50% 감소한 월의 매출액 × 12)
- 창업특례 : 2019년 1~12월 사이에 창업한 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
  - (계산방법) (2019년 월평균 매출액 × 12) - (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50% 감소한 월의 매출액 × 12)

〈고용조정조성금 특례〉(雇用調整助成金 新型コロナ特例)

■ 사업 개요

- 긴급대응기간 : 2020. 4. 1 ~ 6. 30
- 지원요건 : 최근 1개월간 월평균 사업활동 지표(매출액 또는 생산량)가 전년 동월 대비 5% 이상 감소(기존 3개월간 10% 이상 감소)
  - 종업원 휴업 합계일이 대상 노동자의 소정노동일수의 일정 비율* 이상

  * (기존) 중소기업 1/20, 대기업 1/15 → (개선) 중소기업 1/40, 대기업 1/30
- 담당부처 : 후생노동성

■ 지원 내용

• 지원금액(조성금)

- 급여부담액* × 지원비율(조성률) + 교육훈련 실시 가산액**

* 평균임금액 × 휴업수당 등의 지불비율

** (기존) 1인당 1일 1,200엔 → (개선) 중소기업 2,400엔, 대기업 1,800엔

• 지원비율(조성률)

- 휴업수당, 교육훈련 시 임금 등의 일정 비율* : 1인당 1일 8,335엔 한도

* 중소기업 : (기존) 2/3 → (개선) 4/5 ~ 9/10(해고하지 않을 경우)
* 대 기 업 : (기존) 1/2 → (개선) 2/3 ~ 3/4(해고하지 않을 경우)

- 중소기업에 한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조성률 10/10 적용

*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고 도도부현대책본부장이 행하는 요청에 협력하여 휴업 조치, 근로자 휴업 시 대상 근로자에게 상한액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불한 경우

(2) 세제지원 등

■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확대 ['20.2.1~]

• 지원내용 :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액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(미국의 NOL Carryback과 유사)

• 지원대상 : (기존) 자본금 1억엔 이하 → (개선) 자본금 10억엔 이하

■ 납세 유예의 특례 ['20.4.30~]

• 특례대상 : 국세, 지방세

• 지원요건 : 한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% 이상 감소

• 지원내용 : 최대 1년간 세금 납부 연기

■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['20.2.1~]

• 유예대상 : 후생연금보험료, 노동보험료

• 지원요건 : 한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% 이상 감소

• 지원내용 : 최대 1년간 보험료 납부 연기

다. 독일

(1)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실행 ['20.3.27]

■ 추경 개요

- 추진경과 : 정부 추경안 마련(3.23), 연방상원 통과(3.27)
- 추경규모
  - 예산지출 :1,225억 유로*
    * 2020년도 정부예산(3,620억 유로)의 33.8% 수준
  - 세수결손 : 335억 유로
- 주요내용 : 소상공인 긴급지원(Sofortilfe), 경제안정화기금 조성(WSF) 등

■ 소상공인 긴급지원(Soforthilfe Corona)

- 신청기간 : 2020. 3. 30 ~ 5. 31
- 신청자격 : 종업원 10인 이하 소상공인 등
  - 독일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과세관청에 등록된 사업자
- 지원요건 : 2020년 3월 11일 이전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지만,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
- 지원내용 : 종업원 규모별로 3개월 간 일정금액 무상지원(1회)
  - (5인 이하) 최대 9,000유로 / (10인 이하) 최대 15,000유로
    * 세부 조건은 주 정부별로 상이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*
  * 독일 정부는 이번 지원의 목적이 소상공인의 존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고(rasch), 비관료주의적(unbuerokratisch)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, 신청절차를 간소화
- 지원예산 : 500억 유로
- 담당부처 : 연방 재무부(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)

(2) 세제지원 등

■ 단축근무지원금 확대 ['20.3.1~]

- 지원대상 : 종업원 일정 비율* 이상의 근무시간이 10% 이상 감소한 기업

  * (기존) 종업원의 1/3 이상 → (개선) 종업원의 10% 이상

- 사업주 지원(3.1~)

  - 건강·재해·연금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의 일정 비율*을 1년간 지원

  * (기존) 50% → (개선) 100%

- 근로자 지원

  - 단축근무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*을 1년간 지원(4.22~)

  * 1~3개월차 : 기존과 동일(무자녀 60%, 유자녀 67%)

  * 4~6개월차 : (기존) 무자녀 60%, 유자녀 67% → (개선) 무자녀 70%, 유자녀 77%

  * 7~12개월차 : (기존) 무자녀 60%, 유자녀 67% → (개선) 무자녀 80%, 유자녀 87%

※ 지원대상을 용역 및 파견지원까지 확대(3.16~)

■ 납세 유예의 특례 ['20.3.19]

- 특례대상 : 법인세, 영업세, 부가가치세
- 지원요건 :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이고 상당한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

  - 실제 손해금액을 입증할 필요는 없음

- 지원내용 : 세금 납부 연기(2020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)

■ 코로나 위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세제조치 ['20.4.3]

- 지원대상 :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종사한 직업군

  - 의료진, 슈퍼마켓, 운송업 등

- 지원기간 : 2020. 3. 1 ~ 12. 31
- 지원내용 :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코로나 특별상여를 지급할 경우 1,500유로까지 세금 및 사회보험료 감면

4. 정책과제

가. 설문조사와 해외 정책사례 분석 시사점

■ 중소기업들은 2020년도 하반기 경영 여건과 채용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, 신규인력 채용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

- 중소기업의 72.5%가 2020년도 하반기 경영환경이 상반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하반기에 경제위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5.5%에 불과
- 중소기업의 35.3%는 2020년도 하반기 종업원 수가 상반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증가할 것이라는 대답(17.1%)보다 2배 이상 많았음
  - 창업기업(40.4%)이 일반기업(33.8%) 대비 높게 나타남
- 중소기업의 60.5%가 2020년도 하반기에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, 신규인력 채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.8%에 불과
  - 혁신형 중소기업(73.0%)이 일반 중소기업(56.4%) 대비 채용 필요성을 크게 인식

■ 해외 주요국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고용유지와 소상공인 존립기간 마련을 위한 소방수 역할에 집중했으며, 향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리쇼어링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

-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형태로 정책 추진
  - (美)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보호, (日) 고용조정조성금 특례, (獨) 단축근무지원금 등
-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파격적 지원
  - (美) 중소기업 경제피해 재난대출, (日) 지속화급부금, (獨) 소상공인 긴급지원 등
- 이익발생기업 대상의 세액공제보다는 결손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확충
  - (공통) 결손금 소급공제, 세금 납부 유예,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
-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
  - (美)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미국 제조기업 이전비용 전액을 지원할 필요 (국가경제위원회 Larry Kudlow 위원장, '20.4.10)
  - (日) 해외 생산거점의 국내 이전을 위해 2,200억엔의 추가 예산 편성('20.4.30)

나. 정책과제

■ '(가칭) 중소기업 뉴딜일자리기금' 조성

- (현황) 중소기업의 89.3%는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(p.5)
  -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'새판짜기(new deal)' 필요
- (개선) '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액' 중 일부를 재원으로 '(가칭) 중소기업 뉴딜 일자리기금'을 조성하고, 다음 용도로 사업 추진

① 대-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(국정과제 41)

- (예)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제 활성화
- (예)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(예: 내일채움공제 정부 납입 등)

②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투자

③ 중소기업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(예: 스마트워크, 주택, 교통, 작업장 환경개선 등)

■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

- (현황)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
  - 외국인 고용허가제*(E-9) 체류 현황(법무부) : 188,363명('09) → 276,755명('19)

*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

※ (해외사례) 싱가폴은 서비스업의 내국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의존비율(DRC)을 40%('19) → 38%('20) → 35%('21)까지 단계적으로 축소

- (개선) 외국인 근로자(E-9)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를 전제로 고용장려금 지원
  - 2020.7.1.~2021.6.30.까지 외국인 근로자 대체인력 1인당 500만원 제공
  - 중소기업 특성화고와 외국인 근로자 활용 중소기업 간의 취업연계 활동 강화

* 특성화고 졸업생과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 현장 기술인력로 근무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대체 가능

※ 중소기업의 83.0%가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했을 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(p.5)

■ 국내 복귀 중소기업의 직업계고 졸업생 채용 지원

• (현황) 신흥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수요 증가

- 해외 공장 보유 중소기업의 20.2%가 코로나19에 따른 리쇼어링 의향 존재 (최종민·박재성, 2020)

• (개선) 국내 복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(병역특례) 운영 시 우대하고, 중소기업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시 고용장려금 지원

- 지역과 분야 등을 검토한 후 국내 복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특성화고를 연계하고,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

- 현장실습 이후 채용까지 연계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90%를 채용 후 2년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(연 2,000만원 한도)

- 국내 복귀 중소기업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과 T/O 배정 시 우대

■ 창업 중소기업의 청년 연구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고용기업의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

• (현황) 창업 기업은 이익발생을 전제로 하는 세액공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

-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 중소기업 비중(국세청, 2019) : 37.6%

- 폐업자 중 업력 5년 미만 비중(국세청, 2019) : 73.0%

• (개선) 업력 7년 미만* 중소기업의 청년** 연구인력*** 신규 채용 시 인건비의 25%****를 회사의 원천징수세액*****에서 공제

- 지원기간 :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에 한해 채용 후 1년 간

- 지원금액 : 채용인력 1인당 최대 1,000만원, 1개사당 5천만원 한도

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상 창업자 / ** 「청년기본법」 상 15~34세

**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근무

**** 중소기업 R&D 세액공제율과 동일(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)

*****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(소득세법 §128)

※ (해외사례) 미국은 업력 5년 이하 스타트업의 R&D투자에 대해 회사가 지불하는 급여세(Payroll Tax)에서 최대 5년간 25만 달러까지 공제 가능(PATH Act, '15.12.18)

■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이후 퇴사한 직원을 재고용한 경우 지원사업 참여 허용

- (현황) 정부의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재고용에 대한 지원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
  - 재입사자의 경우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해 허용
    * (고용부) 고용창출장려금, 청년추가고용장려금, (중기부)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등
- (개선) 중소기업에서 코로나19 이후 부득이하게 퇴사한 인력을 재고용했을 때 정부 지원사업 참여 허용
  - 재입사 기준요건 완화 : (현행) 퇴사 후 1년 이상 → (개선) 3개월 이상
  ※ 중소기업의 84.5%는 코로나19 이후 부득이하게 퇴사한 직원을 재고용 했을 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(p.5)

■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확대

- (현황)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결손금을 소급하여 법인세(소득세)와 지방소득세 환급
  -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(법인세법 §72, 소득세법 §85의2)
  -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계산(법인세령 §110, 소득세령 §149의2)
  -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(지방세법 §101, §103의28)
- (개선) 환급 적용기간을 1년 → 3년으로 확대
  -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당분간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

참고자료

국세청(2019), 「국세통계연보」.

법무부(각연도), 「출입국·외국인정책 통계연보」.

중소기업중앙회(2020), 「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업종별 피해실태조사 보고서」.

최종민·박재성(2020), 「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및 원·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의 영향 및 시사점」, 중소기업연구원.

통계청(2020), 「2020년 4월 고용동향」.

한국경영자총협회(2020), 「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업 인식 및 현황 조사」.
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2020), 「코로나-19 위기상황에 대응한 기업 R&D 활동 실태조사」.

KOSBI 중소기업 포커스

발행인 : 이병헌

편집인 : 전인우

발행처 : 중소기업연구원

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(신대방동 686-70) (07074)

전화: 02-707-9800, 팩스: 02-707-9894

홈페이지: http://www.kosbi.re.kr

인쇄처 : 사단법인 나눔복지연합회

■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(연구진)의 견해이며,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■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